의안번호	2202869
의 뢰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4.9.13.
추계번호	24B28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적용 범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상세 사유

❑ 현행 「근로기준법」은 동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구 분	적용법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자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개정안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

○ 개정안은 국가하여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개정안의 재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고, 지원 수준 또한 예산의 범위 내로 유동적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